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18547
----------	-------

제안연월일 : 2026. 4. .

제안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심사경과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	심사 경과
2205706	박해철의원	2024. 11. 19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2025.07.18.)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2026. 4. 2.) 상정 후 축조심사
2213613		2025. 10. 15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6.03.25.)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2214074	이용우의원	2025. 11. 10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2026.4. 2.) 상정 후 축조심사
2214843	김태선의원	2025. 12. 3	
2215827	김용태의원	2025. 12. 31.	

나.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2026. 4. 2.)에서 위 5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다.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 4. 7)에서 이러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대다수가 농·축산업, 어업 분야의 계절성 사업 또는 영세사업장으로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이 열악하다는 점이 꾸준히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고용노동부의 최근 3년간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 현장점검 결과를 보면, 매년 기준 미달 주거시설로 적발된 건수가 평균 100여건에 이르고 있으나, 기준미달 주거시설 제공에 대한 직접적인 금지조항이 없어 위법한 가설 건축물 등을 숙소로 활용하는 사례가 개선되지 않고 있음.

이에 외국인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숙소가 「건축법」을 위반한 불법 가설건축물이 되지 않도록 명확히 금지하고, 안전한 주거시설 확충을 촉진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주거환경 개선, 상담, 교육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아울러 현행법률의 ‘기숙사’라는 용어는 「근로기준법」상 부속 기숙사와 혼동되는 점을 감안하여, 현실의 다양한 주거형태를 반영할 수 있는 ‘주거시설’로 용어를 변경하고자 함(안 제22조의3 신설 등).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의 제목 중 “기숙사의”를 “주거시설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기숙사를”을 “주거시설을”로, “「근로기준법」 제100조에서 정하는”을 “다음 각 호의”로, “준수하고”를 “모두 충족하고”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기숙사를”을 “주거시설을”로, “제공하여야”를 “제공하고, 이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3항 중 “기숙사”를 각각 “주거시설”로 한다.

1. 「근로기준법」 제100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할 것
2. 「건축법」 제20조제6항 및 제22조제6항에 따라 가설건축물대장 및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용도가 주거시설에 적합할 것

제2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3(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관할 구역에서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 상담, 교육 등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5조제1항제2호 중 “기숙사의”를 “주거시설의”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2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2조의2(<u>기숙사의</u> 제공 등) ①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u>기 숙사를</u> 제공하는 경우에는 <u>「근로기준법」</u> 제100조에서 <u>정하는</u> 기준을 <u>준수하고</u>, 건강 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 여야 한다. <u><신 설></u> <u><신 설></u></p> <p>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u>기 숙사를</u> 제공하는 경우 외국인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외국인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사전에 <u>제공하 여야</u>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제22조의2(<u>주거시설의</u> 제공 등) ① ----- <u>-주거시설을-----</u> <u>--다음 각 호의-----모두</u> <u>충족하고-----</u> -----.</p> <p>1. 「<u>근로기준법</u>」 제100조에서 <u>정하는 기준을 준수할 것</u> 2. 「<u>건축법</u>」 제20조제6항 및 <u>제22조제6항에 따라 가설건축 물대장 및 건축물대장에 기재 된 용도가 주거시설에 적합할 것</u></p> <p>② -----<u>주</u> <u>거시설을-----</u> ----- -----<u>제공하</u> <u>고, 이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u> <u>게 제출하여야-----</u>. ----- -----.</p>

1.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
2. 기숙사의 설치 장소
3. 기숙사의 주거 환경
4. 기숙사의 면적
5. 그 밖에 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기숙사 정보 제공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5조(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① 외국인근로자(제12조 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할

1. 주거시설 -----
2. 주거시설 -----
3. 주거시설 -----
4. 주거시설 -----
5. -----주거시설-----

③ -----주거시설-----

-----.

제22조의3(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관할 구역에서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 상담, 교육 등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5조(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① -----

수 있다.

1. (생략)

2. 휴업, 폐업, 제19조제1항에 따른 고용허가의 취소, 제20조제1항에 따른 고용의 제한, 제22조의2를 위반한 기숙사의 제공,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경우

3. (생략)

② ~ ④ (생략)

-----.

1. (현행과 같음)

2. -----

-----주거시설
의-----

3.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